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8. 27. 이민석 의원 외 7인

나. 회부일자: 2021. 8. 31.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1. 9. 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이민석 의원】

가. 제안이유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도록 명시하고,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에서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점검하고 보수하도록 변경(안 제7조 제1항)
-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의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7조 제4항)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이민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¹²⁾에 근거하여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도록 명시하고,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에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에서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변경하고
- (안 제7조 제4항)에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의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
-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마포구민의 약 17%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며, 2020년 마포구의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통근·통학)은

1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2.6%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등 저탄소 정책 추진 및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라 자전거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1] 서울시 자전거 이용률 통계

(단위: %)

연도	구분	이동수단으로 이용	운동수단으로 이용	이용하지 않음
2019	서울시 전체	6.6	11.3	82.1
	마포구	7.1	9.9	83

출처: 서울특별시 열린데이터 광장

[표2] 서울시 통근·통학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통계

(단위: %)

연도	구분	도보	자전거	자전거 + 기타	오토바이	버스	지하철도(철도)	버스 + 지하철	택시	승용차	승용차 + 버스	승용차 + 지하철	기타
2020	서울시 전체	18.2	2.5	0.3	0.9	23.3	14.3	21.2	0.1	16.5	0.9	1.5	0.3
	마포구	21.2	2.6	0.2	1.9	26.1	12.3	17.3	0.1	16	0.9	1.1	0.3

출처: 서울특별시 열린데이터 광장

- 한편, 자전거 이용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자전거 절도 문제와 함께 자전거 주차장 및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 본 개정조례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가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년 1회 이상”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구민의 자전거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3] 마포구 자전거 주차시설 현황

(2021. 6월 기준)

구분	총 계	자전거거치대	자전거주차장
지점(개소)	101	99	2
거치대수(대)	4,911	4,641	270

- 또한, 현재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에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¹³⁾ 자전거 도난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으므로, 자전거 이용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은 향후 자전거 도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4] 마포구 자전거주차장 현황

(2021. 6월 기준)

구분	위 치	주차대수	시행일시	시설형식
계	2개 지점	270대		
1	합정역 8번출구	200대	2015. 7	건물형(자주식 2단)
2	홍대입구역 6번출구	70대	2017. 5	건물형(자주식 2단)

- 아울러, 전 세계가 이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량을 줄이는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문화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파고들도록 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자전거 대여소 및 보관대 확충과 함께 지하철역과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 방법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도록 소관부서는 자전거를 활용하여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이 되도록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3) 자전거 주차시설 101개 지점 중 자전거주차장 2개 지점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처음으로